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및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업무 매뉴얼

2025. 4. 21.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 점 검 과

이 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입니다. 본 매뉴얼의 임의 수정 및 재배포 시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제도 현황 및 도입배경 1
2.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제도 개요 및 근거 2
3.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주체4
4. 대규모내부거래 주요 거래유형 8
5-1. 대규모내부거래 거래상대방(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 … 10
5-2. 대규모내부거래 거래상대방(상품ㆍ용역거래) 12
5-3.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13
6. 대규모내부거래 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기준 … 14
7.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18
8.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시기 및 내용 29
9.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 방법ㆍ절차ㆍ서식 22
10.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 23
11-1.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25
11-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상품・용역거래 28
12.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 30
13. 대규모내부거래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한눈에 보기 · 31
〈참고 : 주요 사례〉 32
〈참고 : 공시 양식〉 66

1.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제도 현황 및 도입배경

□ 공시제도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0.12.29. 공포)에 따라
 2021. 12. 30.부터 아래 표와 같이 공시대상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총 5개 공시제도를 운영

〈莊1〉

공시제도 현황

공시제도

- o 공시대상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o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 o 공시대상회사의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법 제28조제1항)
- o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현황 공시(법 제28조제2항)
- o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9조)

□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 o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거나
-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 (법 제26조: 2000. 4. 1.. 법 제29조: 2021. 12. 30.)

^{*} 이하 법 제2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행위를 "대규모내부거래등"이라 함

2. 대규모내부거래등의 공시제도 개요 및 근거

□ 개요

ㅇ 공시대상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尣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 상품 • 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 및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회사를 위하여

100억 원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및 상품·용역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Ţ

ㅇ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9조)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Û

거래상대방 ·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尣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尣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회사를 위하여

100억 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자금·자산·유가증권 및 상품·용역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尣

□ 근거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내용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尣

시행령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尣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벌칙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조치 등) 제1항 및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尣

시행령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호 및 별표9

尣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주체

- □ 공시대상기업집단 <u>소속 국내회사</u> 및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 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
 -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관리과)에서 지정
 - 공시주체는 국내회사와 공익법인이 되므로 국내회사와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은 공시의무 없으며, 회사에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포함
-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 또는 공익 법인은 편입 통지일부터 적용(법 제31조 제2항)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 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기업집단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② "공익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은 5월 중 발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 내용을 참고

4.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행위

□ 국내회사와 공익법인이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거래^①하는 행위와 공익법인이 국내 소속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②하는 행위임

① 대규모내부거래(국내 소속회사와 공익법인 모두 해당)

ㅇ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이 유기증권 거래

-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ㅇ 자산 거래

-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 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ㅇ 상품 또는 용역거래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 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공시
 - * 생산된 제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계열회사 용도의 사무실·공장 등을 건축, 계열회사 제품의 운송 등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계열회사의 상품·기업 브랜드 광고를 의뢰받아 제작 및 집행하는 업무 등)

- ② 국내 소속회사 주식 취득 또는 처분 행위(공익법인만 해당)
 - o <u>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관계없이</u>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

□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

-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 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2.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라.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 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고시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한다.
-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 3. 제1항제4호의 행위

5-1.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

□ 자금·유가증권·자산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동일인(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 ② 동일인관련자
 - 동일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인지한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
 - *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없음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o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ㅇ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 등

□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략)

2.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시행령

-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 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5-2.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상품・용역거래

- □ 상품·용역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의 범위
 - o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라 함)
 - * 포스코, 케이티, 케이티엔지 등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제외
 - o A의「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이하 "B" 라 함)
 - * 제1항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함 제3항 다른 회사의 발생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봄
 -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B의 발행주식을 20% 미만 소유한 경우, A와 B간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용역거래 시 A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다만, B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함)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략)

-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략)
 - 2. (생략)
 - 라.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시행령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 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④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5-3. 대규모내부거래등 거래상대방 –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공익법인은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공시대상기 업집단 소속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 미 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략)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고시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① (생략)

- ② 공익법인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

6. 대규모내부거래 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기준

□ 공시대상 거래규모

- 공시대상회사: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 o 공익법인: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 만인 경우에는 5억원)
- 기본순자산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기본순자산
- 순자산총계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최근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순자산총계
- ※ 다만,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임

□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 판단기준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의 수익증권을 동일 판매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써 단기금융상품(MMF 등)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1회 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단 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기준)일 경우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에 해당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상품 · 용역거래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공익법인의**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거래유형별 거래금액 산정 기준

- ㅇ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1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등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납입한 시점부터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에 해당
 - ※ 단체보험 중 개인과 회사가 공동으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개인부담금액을 제외 하고 회사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
 - ※ 보험료총액 약정이 없는 퇴직연금보험의 거래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상품 · 용역거래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 다만, 거래당사자 한쪽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 거래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의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 주식의 취득** · 처분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고 시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대규모내부거래등"이란 법 제26조·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 1.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거래행위
 -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 (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자신의 자본총계(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금(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공익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결산한 최근 회계연도말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하며,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2항제1호 제2호의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행위와 제2항제3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제4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상품·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7.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 □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야 함
 - ㅇ 공시대상회사: 「상법」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 상장법인이 「상법」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3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함
 - ㅇ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부터 제10조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상법」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 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시행령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시기 및 내용

□ 공시시기

8.

이사회 의결 후 상장법인은 3영업일 이내, 비상장법인 및 공익법인은
 7영업일 이내 공시

□ 공시내용

○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함),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 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 이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 계약서상의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에 명시이지 거래기간에 계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ㅇ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어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 이나 카드결제
- 어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임)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 체결
- 다만, **공익법인**이 <u>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의 주식을</u> 취득·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략)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생량)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⑤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규모내부거래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행위는 제외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 이내에, 상장회사가 아니거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영업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 거래에 한정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9.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방법 • 절차 • 서식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
 - *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 공익법인 등은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신청해야 함[홈페이지 이용 문의: (국번없이) 1332]

□ 다른 법과 공시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고 ·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함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⑤ "수탁기관"이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 ⑥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
- ⑦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③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 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②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이미 공시한 주요 내용의 변경

- □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 * 주요 공시내용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용역거래에 한함),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임(공시규정 제8조)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자산* 거래 취소 시(100% 금액변경)
 다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됨
 - * 상품·용역은 특례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 공시 가능(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 주요내용의 변경

- ㅇ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하 거나 감소한 경우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보며,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ㅇ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만 하면 됨
- o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공익법인의 변경사항 공시

 편입되기 전의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해당 되면서, 그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 및 공익법인의 공시 관련 정리

- ㅇ 신규 편입된 회사 및 공익법인은 계열편입 통지일부터 법 적용
- 편입되기 전의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으며, 다만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편입 후 새로운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사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③ 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의 목적·상대방· 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4. 제2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4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④ 대규모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당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그 상대방이 거래가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11-1.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입법 취지

 금융·보험업의 특성상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로 빈번히 발생하는 정형화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개별 거래 건마다 미리 이사회 의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란

- ①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해당 회사의 영위업종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¹⁾ 일상적인 거래분야²⁾에서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³⁾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규모내부거래
- 1)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 중 통게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64~66으로 시작하는 금융·보험업 관련 거래 분야로 한정
- 2) '해당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란 해당 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영위하는 영업 가운데 비중이 높고 거래 빈도가 높은 거래
- 3) 거래 일방이 거래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다른 일방이 거래조건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거래형태가 약관에 의한 거래이며,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경우는 약관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특례(이사회 의결 면제, 일괄 공시)

- 금융·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영위업종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
 - ※ 다만, 금융·보험사도 계열 금융회사와 일상적 거래분야 외의 약관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거나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후 거래행위 후 그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함

- □ 금융·보험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등에 대한 특례 (분기별 일괄 의결)
 - 공시대상회사 등이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분기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의결 후 상장 3영업일, 비상장회사 및 공익법인 7영업일 이내) 하고.
 - ※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산을 정하여 일괄 의결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행위를 하면 <u>그 내용을 다시 공시</u>(거래행위 후 상장 3영업일, 비상장 7영업일 이내)해야 함
 - ※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거래내역을 일괄 공시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C)가 계열사인 금융·보험사(D)의 약관에 따른 거래를 할 경우, C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가 아니라면 거래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거나 금융·보험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음
 - ※ 공시양식: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등 해당 거래와 관련된 양식

□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④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행위를 말한다.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상의 거래행위일 것
 -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일 것

-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 대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등(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 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해당 금융거래행위 후 7 영업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⑥ 공시절차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1-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특례 - 상품ㆍ용역 거래

□ 입법 취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비(非)금융・보험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 및 제공하는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례 도입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시기에 대한 특례

- (1년 거래기간 일괄 의결)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거래 발생시)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
- 분기 중에 계열편입이 된 경우 계열편입 통지일로부터 분기 종료일 까지의 상품용역의 거래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함

□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례

- (20% 이상 감소된 경우)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 공시
 - ※ 다만,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품·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관련규정

-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은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이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12. 대규모내부거래등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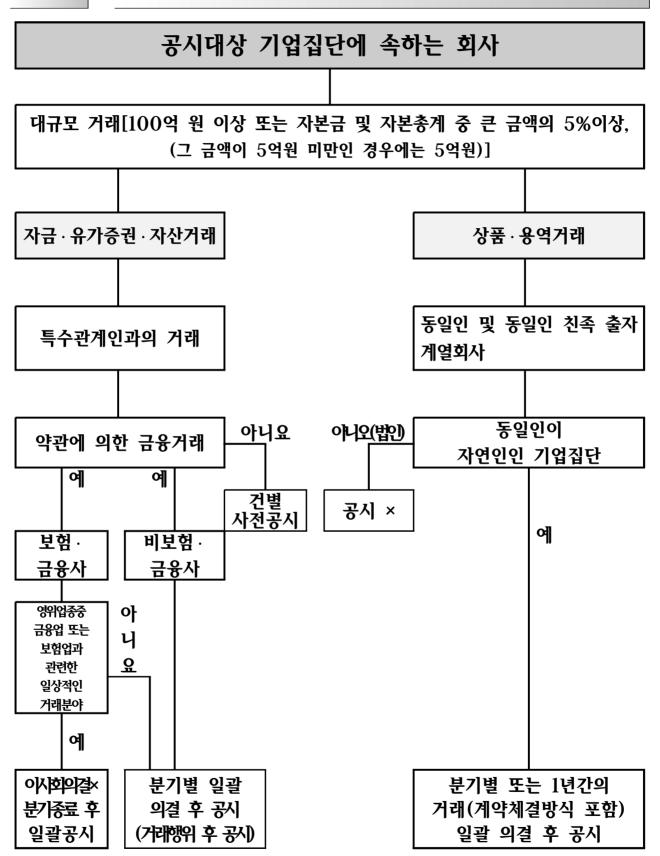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근거 : 법 제37조 제1항 제7호]
- 장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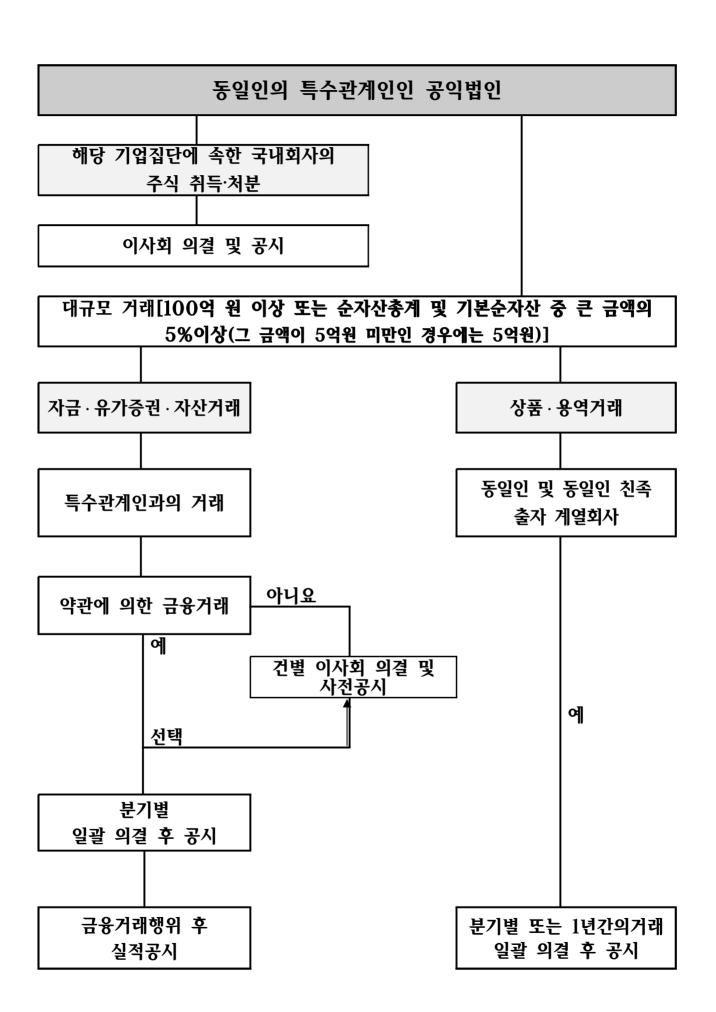
[근거: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94조 제3호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

- o 공시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 별표9 및 과태료 부과기준(고시)에 따라 부과금액 결정
- 이 위반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부(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3. 대규모내부거래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한눈에 보기





<참고 : 주요 사례>

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여부

- 1.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거래규모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음 만일 거래규모가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해당되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2.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라는 거래에 대한 예시?
- □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CP 등을 비계열회사를 통하여 동일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하여 주식, CP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위한 내부거래에 해당됨이 경우 공시양식의 거래상대방란에는 거래를 중개한 비계열회사를 기재하고, 거래내역란 중 채권(또는 CP 등)의 발행자란에계열회사를 기재하면 됨
 - 3.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100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더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4.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의 **편입 통지를 받기 전 거래상** 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규모내부거래 등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의 편입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규모내부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 발생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 등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여도 ①동일인 및 친족출자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 등 분기별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이거나 ②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편입 통지받기 전 거래금액,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이 명시된 세부 거래조건이 아닌단순 약정형태로 체결하고 있던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 통지받은 이후 세부 거래조건 등을 별도 체결하는거래이거나, ③당초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거래라면 거래 개시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 계열 편입 통지받은 날부터 분기종료일까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 판단
 - 5. 계열회사가 발행한 액면 100억 원의 CP를 계열회사가 98억 원에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계열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여부
- ☞ 유가증권의 거래금액 기준은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6.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 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음

- 7.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8. A사와 B사는 계열회사였으나 B사가 2025.4.1. 계열 분리되었는데, A사와 B사간의 대규모내부거래 중 2025.3.31.와 2025.4.1.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여부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또는 공익법인으로 편입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부터 적용함

따라서 2025. 4. 1. 이후에 발생한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2025. 3. 31. 발생한 거래는 이사회의결 및 공시대상에 해당됨

- 9. 계열사 A사가 회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고, 이를 계열증권사가 총액을 인수한 후, 이를 계열사 B사에게 105억 원, 계열사 C사에게 95억 원, 계열사 D사에게 90억 원을 매각한 경우 계열사 A사, B사, C사, D사 및 계열증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여부(C사, D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는 2,000억 원임)
- □ A사, 계열증권사, B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C사 및 D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10.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 ☞ ① 일정한 거래 후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래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 매입 후 중도 환매하거나 만기가 되어 해제하는 경우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수익증권(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의 출금의 경우
 - ②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 다만, <u>공익법인</u>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u>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과 관계없이 이사회</u>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11. 거래규모 산정기준인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에서 자본총계와 자본금의 기준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 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 ☞ 공시대상회사 등은 자본금(기본순자산)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는 최근 사업 또는 회계연도말의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순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함

- 12. 4월 1일자로 존속법인과 2개 신설법인으로 회사가 분할할 예정이다. 회사분할 이후 각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거래 금액 기준인 자본총계는?
- □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회사분할기일 이후부터 분할이 일어난 연도 내에서의 자본총계는 회사분할 시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2개사 등 총 3개사에게 각각 분할되는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판단

- 13. 부동산임대차 계약 시에는 거래규모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3영업일 이내(비상장회사·공익법 인은 7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함
 - 14.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다만, 이미 공시한 자금·자산의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100% 금액변경)시, 상대방은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면 됨

- 15. 부동산매매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 당초 의결·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거래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이라면 주요내 용 변경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당초 계약한 토지의 인접토지 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 이므로 추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16. 부동산매매 계약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 ©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할 필요가 없음

- 17. 회사 CI(로고) 사용에 대한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계열사와 CI로고(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자산거래에 해당

이는 지배·관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브랜드(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로 CI라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로서 계속·반복적인 일상적 영업행위와는 구별됨

회사는 CI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공시(공시양식: '특수관계인 과의 내부거래')해야 하며, 예측이 곤란한 경우 거래금액에 거래 예상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표권 사용료 산출식을 기재

- 18. 비영리법인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까?
- □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었음을 통지받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그 외의 비영리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계열회사는 비영리법인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19.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에 전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까?
- □ 특수관계인 간에 전입금을 주고받는 것은 자금 제공행위에 해당 하므로 그 금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20. 공시대상회사 등이 국외 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는지?
- □ 공시대상회사와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외 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다만, 공시대상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국외 계열 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 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21. 약관규제법 제2조에 따른 약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래행위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래행위 예시
- ☞ ①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②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③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 임대차하는 경우

- 22. 금융보험사인 손해사정사 A사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퇴직연금 보험을 연금사업자이자 계열금융보험사인 생명보험사 B사에 가입하였다. 당해 회계연도의 납입누적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A사와 B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 대 해당 거래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거래임. 손해사정사 A사는 금융보험사이긴 하지만, 퇴직연금거래가 A사의 영위업종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의결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고 거래 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 (또는 비금융보험사에 준하여 분기별 일괄 이사회 의결 특례 적용은 가능) 생명보험사 B사는 금융보험사이며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해당 퇴직연금거래가 B사의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사회 의결하지 않고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공시하는 특례 적용 가능

- 23. 비금융보험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시 수익증권이나 CP 등 수시로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분기별 거래금액(거래한도) 기준은?
- □ 원칙적으로 금융상품별(예: 수익증권, CP, 회사채 등)로 대규모 내부거래기준을 상회하는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금액을 누적 합산한 금액이 거래한도임
 - 다만, 수익증권 중 초단기수익증권*(MMF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잔고금액을 기준으로 함
 - * 초단기수익증권은 만기가 없는 수익증권으로써 중도환매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을 의미함

- 24. 계열사가 이미 공시된 내용에 따라 자사주신탁(펀드)에 가입한 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동 매입행위가 공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자사주를 공개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아니며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자사주신탁(펀드)에 가입한 회사가 수탁금융회사(은행 등)에 지시 하여 계열증권회사를 통하여 자사주를 매매하도록 하였어도 이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계열증권회사는 단순히 계열사주식 매매의 창구역할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계열사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사주신탁(펀드) 가입회사나 계열증권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25.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 거래한도 제한이 있는지?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 거래한도의 제한은 없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목적은 분기별 약관 거래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한도를 사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6. 계열사 A가 계열금융사 B에게 MMF 70억 입금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또 다른 계열금융사 C에게 가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억 원 미만인지 아니면 30억 원 미만인지 여부?
-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여부는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열 금융사 C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MMF의 한도액은 100억 원 미만 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 미만임
 - 27.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2개 이상의 계열금융사에 대한 MMF 등에 관한 분기별 한도 의결 및 공시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분기별 거래한도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일반적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마찬가지로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 목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28. 비금융보험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공시시점은 입금 전인지 아니면 입금 전후 며칠 내인지의 여부?
- □ 비금융보험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이사회 의결 후 3영업일(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따라 실제 거래를 한 경우에도 거래 후 3영업일(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에 동 거래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29. 외국인 이사로 인해 1년에 2회 정도 정기 이사회만 개최되고 수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8개월 내지 1년 기간 동안의 거래행위를 일괄하여 결의해도 되는지 여부, 아니면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 ©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분기별로 사전에 한도액 등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후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 후에 공시만 하면 됨

따라서 최소한 분기별로는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며, 8개월 또는 1년 기간 동안의 거래행위를 일괄하여 의결할 수 없음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0.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회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 □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임
 - 31. 계열회사에 가입한 퇴직연금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퇴직연금의 도입배경이 근로자의 퇴직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계열회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 원 이상이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됨

- 32.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시점, 거래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순자산총계) 또는 자본금(기본순자산) 중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납입할시점 이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
 - 33. 영업권의 양수도 계약 시에는 어느 양식에 공시해야 하는지?
- "특수관계인에게 영업양도'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 수' 양식을 이용 공시하면 됨
 - 34. 비계열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자사주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까?
-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자사주를 공개시장에서 매매 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35.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공시대상 거래에 해당합니까?
- □ 선물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는 비록 계열 선물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시의 의무가 없음
 다만,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공시의 의무가 있음

- 36. 보험회사의 분기별 공시양식의 기재란 중 『이자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답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보험의 경우 약정 시 거래조건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기재하는 것임. 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와 같이 이자율에 대한 거래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해당없음' 또는 '-'으로 개재하면 됨
 - 37. 수익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도 의결 할 때 거래상대방은 어떻게 지정하여야 하나?
- © 원칙적으로 계열 투신운용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을 지정함. 즉, 계열증권사를 통하거나 비계열증권사를 통하거나 계열 투신 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투신운용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하고, 만약 비계열 투신운용회사에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함

MMF와 같이 투신운용사를 모른 체 계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MMF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함

- 38. 계열 캐피탈 회사나 카드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인지?
- © 할부금융이나 카드를 통한 거래는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 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공시대상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 39. 개인연금은 회사에서 개인별 증권발급 및 급부를 관리하는 바, 동 개인연금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 개인연금보험을 계열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개인부담금액을 제외하고 회사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함
 - 40. 보유중인 계열사 채권을 비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 의무발생 여부?
- □ 계열사 채권을 비계열 증권사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는 내부 거래가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비계열 증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여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
 - 41. 1인 이사 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결의하고 공시해야 하는지?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상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의무는 없으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있음

- ※ 공시기한은 거래행위를 하기 전까지
- 42. 계열증권사에 고객예탁금을 입금하는 경우 의무 발생 여부?
-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임

나. 거래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

- 43.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 거래 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 □ 거래금액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 시 발생되는 거래 금액임. 다만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봄
 - 44.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 합산 인지 아니면 입금액인지의 여부?
-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 이고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님
 - 45.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대상 과의 동일 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
- □ 동일 거래대상과의 동일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 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 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46. 부동산 매매 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연간임대료 산출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 ☞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다만, 해당 부동산임대차 거래가 거래상대방 중 일방에게 상품·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관리비가 매출로 인식이 된다면 거래금액에 포함해야 함

- 47. 월 임대료 10억 원, 보증금 100억 원, 계약기간 3년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위한 거래금액은?
- ☞ 거래금액: 123억 1천만 원

산식: (10억 원×12개월)+(100억 원×3.1%) = 123억 1천만 원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연간임대료+황산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3.1% 적용(2025, 3.개정)
- 48. 단체 일시납보험계약에서 동일 단체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 □ 동일 단체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동일 시점에 계약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시점이 다른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각 계약별 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산정 그러나, 동일한 시점이라면 여러 개의 계약이라 하여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납입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람
 - 49. 초단기 수익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한도 등을 의결할 때 거래한도의 기준인 잔고금액이 1일 입금잔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결대상 기간 내 총 누적잔액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 ☞ 잔고금액은 의결대상기간 내 총누적잔액을 의미함. 따라서 공시 대상회사 등은 의결대상기간 도래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잔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단기 수익증권을 거래할 때에는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공시만 하면 됨

다만, 초단기 수익증권을 제외한 여타 한도의결의 경우에는 의결 대상기간 내 대규모 내부거래기준을 상회하는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 금액 누적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함

- 50. 수익증권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 □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수익증권은 MMF와 기타 수익증권으로 구분하여 거래금액을 산정. 동일 투신운용에서 운용하는 수익 증권 및 MMF는 수익증권과 MMF로만 구분하고 그 안에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

즉, 수익증권 A1호에 100억원, A2호에 60억원, 그리고 MMF1호에 30억원, MMF2호에 80억원을 가입한 경우 공시는 수익증권 160억원, MMF 110억원으로 공시하면 됨

- 51. 공익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회사'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분기에 이루어 질 매출 · 매입액의 산정 기준은?
- ☞ 공익법인별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분기에 이루어지는 매출·매입액을 합산하면 됨

매출액은 **공익법인이 제공한 상품·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분기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말함

매입액은 해당 분기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말함

※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상품·용역거래가 아니지만 거래상대방에게는 상품·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도 그 거래를 상품·용역거래로 보아야 하며, 해당 분기의 거래금액에 합산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함

다. 동일 거래의 범위

- 52. 당사가 동일 거래상대방과 아래와 같이 거래일을 다르게 하여 유가증권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일이 다른 복수의 거래를 동일한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4월 12일 80억 원을, 4월 14일 20억 원을 거래하여 거래금액 의 합계액은 100억 원임(당사의 자본총계는 2,000억 원임)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 1건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없음. 다만, 이러한 거래가 동일 목적을 위한 동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53. 계열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동일 종목의 수익증권을 다음 예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입출금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1) MMF 상품을 4월1일 60억 원, 4월3일 70억 원, 4월6일 80억 원을 입금
 - 예2) MMF 상품을 4월1일 80억 원, 4월3일 90억 원을 입금
 - 예3) MMF 상품을 4월1일 80억 원을 입금, 4월3일 60억 원 출금한 후 4월4일 80억 원 입금
 - 예4) MMF 상품을 4월1일 80억 원 입금하고, 4월3일 80억 원 출금한 후 4월4일 70억 원 입금
- □ 수익증권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판단기 준은 1회의 입금액이므로 수익증권 1회 입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거나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

다만, MMF와 같은 초단기수익증권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므로 1회 입금액이 아니라 1일 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이러한 수차례에 걸친 거래가 공정거래법상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동일한 거래로 봄

- 54.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다른 운용사의 동일한 성격의 수익증권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일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 주은신종MMF 1호에 80억 원, 한빛신종MMF H-5호 에 60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다 수익증권의 판매사나 운용사 중에 하나만 계열사이더라도 이사회의 일을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거래대상 상품의 동일 여부는 수익 증권의 운용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공시의무가 없음

- 55.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사가 동일 운용사의 같은 성격의 수익증권 상품을 판매사를 달리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 AB르네상스1-20호를 계열투신증권사에 70억 원, 계열증권사에 60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 거래상대방이 다르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 동일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위 예시와 같은 경우 각각의 거래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므로 공시대상거래가 아님

- 56.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사가 동일 운용사의 다른 성격의 수익증권 상품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1) 주은신종MMF9호에 70억 원, 주은클린MMF2호에 80억 원을 입금 (클린MMF상품은 만기 1개월짜리 상품임)
 - 예2) 주은신종MMF1호에 70억 원, 주은파워중기9호에 90억 원을 입금(주은파워중기9호는 만기 6개월짜리 상품임)
 - 예3) AB코리아국공채1-1호(공사채형)에 70억 원, AB르네상 스1-20호(주식형)에 95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같은 운용사의 수익증권은 MMF 등 초단기 수익증권과 그 외의 수익증권으로만 구분하므로,

초단기 수익증권은 펀드의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거래로 보며 그 외의 수익증권도 펀드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거래로 봄

따라서 예1)과 예3)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예2)의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57.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같은 운용사의 동일한 성격의 수익증권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일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 주은신종MMF1호에 70억 원을 입금, 주은신종MMF9호에 30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 동일한 성격의 상품은 펀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 거래 대상이므로 위의 예시와 같은 공시의무가 있음

- 58. 아래 예시와 같이 계열회사가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다른 운용사의 성격이 다른 수익증권상품에 입금하는 경우 동일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열사 자본총계 2,000억 원)
- 예1) 주은신종MMF9호에 70억 원, 제일클린MMF1004호에 80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예2) 주은파워단기17호에 60억 원을 입금, AB르네상스1-20호에 40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
- 대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다른 경우는 동일한 거래대상상품이 아니므로 위의 예시의 경우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59. 동일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 및 조건, 내용으로 1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여하는 경우, 1건의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가능한지 여부
- □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자금 대여(차입)의 목적, 대여(차입) 조건, 상환일 등 거래내용의 동일여부를 판단하여 동일거래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1건의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거래금액은 전체 대여자금(150억 원)을 기재하고, 분할하여 집행하는 사유, 집행시기 및 금액을 기타란에 명시

라. 상품 · 용역거래

- 60. 계열회사인 '(주)통합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구축 용역제공 및 H/W, S/W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계열 전산SI회사와 전산시스템구축 계약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
 - 61. 계열 건설업체와 건물 등의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 □ 회사가 계열 건설회사에게 공장, 사무실 등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행위는 상품·용역거래에 해당
 - 62.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와 물품보관 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계열사와 물품보관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보관료를 수수하는 것은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는 상품 ·용역거래에 해당

- 63. 회사는 계열회사인 ○○광고대행㈜에게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전담시키고 있는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 계열 광고대행사에게 제품 및 기업 브랜드 등 광고의 제작 및 집행을 의뢰하는 행위는 상품·용역거래에 해당
 - 64. 산학협력단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 산학협력단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에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

따라서, 해당 국내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이고, 그 국내회사와 분기에 이루어질 매입·매출을 합산한 금액이 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의 5%(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65.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20%, B사 발행주식의 20%, C사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사, C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①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②의 경우 B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③의 경우 A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 66.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1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 C사는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①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67. 당사는 포스코의 상법상 자회사입니다. 당사와 포스코의 상품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 □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므로 포스코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68.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19%를, C사 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1%(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와 C사는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따라서 ①, ②, ③의 모든 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69.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됩니까?
-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출액과 매입액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름

다만, 거래상대방 중에 일방에게만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이 거래를 상품용역거래로 보고 분기별 이루어지는 거래금액에 합산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70. 당사가 당사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아래와 같은 상품 용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는? (당사의 자본총계는 2,000억 원이며, 아래 계약 이외의 상품용역거래는 없음)

계약①: 계약기간('24.1.1 ~ '24.12.31), 거래(매출)금액(300억 원)

계약②: 계약기간('24.3.1 ~ '24.2.28), 거래(매입)금액(200억 원)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내역>

(단위: 억원)

	2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5년 1/4분기	합계액
계약①	80	85	65	70	_	300
계약②	10	35	40	35	80	200

□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발생하므로, '24년 1/4분기 및 '25년 1/4분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24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한편, '24년 2/4분기부터 4/4분기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을 수 있음

- 71. 2024.9.30.에 2024년 4/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10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중 거래금액이 1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당사의 자본총계임 2,000억 원)
- □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이미 공시한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당해 분기 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3영업일(비상장사는 7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72. 2024.6.30.에 2024년 3/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10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결산결과 거래금액이 20억원인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당사의 자본총계 2,000억원임)
- □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 되지만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함
 - 73. 2024.3.15. 2024년 2/4분기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이 90억 원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 였으나 2024.4.1. 새로운 상품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4년 2/4분기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당사의 자본총계는 2,000억 원임)
- 대 해당 분기 중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 등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거래금액이 100억 원 등 이상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 영업일(비상장사는 7영업일) 이내 공시하여야 함

74.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상품용역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75. 계열금융사의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와 상품용역거래 특례 중 어느 규정의 적용받는가?
- 대로 계열금융사의 수익증권이 약관에 의한 금융상품일 경우 약관에 따른 금융거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음
 - 76. 상품·용역거래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분기 중에 발생할 금액에 대해 100억 원 등이 넘어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도 괜찮은가요? 또는 정확한 거래금액 산정을 위해 사전공시를 하지 않고 분기말 시점에 해당 분기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결의 및 공시 가능한가?
- " 공시대상회사 및 공익법인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계열 회사와 분기별로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금(기본순자산) 또 는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분기 전 예상되는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 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 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즉, 분기 전 의결·공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 중 이사회 의결· 공시가 가능함)

- 77. 계약 건별 계약체결방식을 기재할 때 계약서상 계약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 □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 등 거래내역을 기재하라는 취지로, 계약명은 본래 계약의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요약하여 기재하되, 계약명 자체가 영업상 비밀인 경우 등에는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음
 - * 예) ××× 신제품 광고 계약 → 제품 광고 계약
 - 78.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계열회사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출자에 따른 부수적 거래로 보아야 하는가?

☞ 부수적 거래 아님

공시규정 제4조 제5항 제1호는 유가증권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이고,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는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열회사 A가 유상감자를 위해 A사에 출자한 계열회사 B에게 자신의 발행주식을 사들여 그 보유주식 가치만큼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출자자 또는 주주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출자와는 별개로 A와 B 간 주식의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

* 100억 원 이상 또는 회사의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이상

- 79.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자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변경으로 보아 다시 이사회의결을 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지?
-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하고 공시를 하였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거나(일방의 취소에 해당) 해당 행 위에 대해 재검토하여 이사회 의결 후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 받 고자 하는 경우 재검토 내용에 이미 공시한 사항의 주요 내용변 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

<참고 : 공시 양식>

С	내규모내	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양식
	1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3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4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5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6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7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8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9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결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의결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의결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제휴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이전
대규모내부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술이전
거래공시	1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1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19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20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2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인계
	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2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유가증권 매도
	2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유가증권 매수
	30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3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32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33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34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36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3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38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3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40	특수관계인에 대한 CP매도
4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P매수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4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매수
44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4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46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리스 (Lease)]
47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적금]
48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파생금융상품]
49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50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CP]
51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기타 유가증권]
52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53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주식]
54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채권]
55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대여]
56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차입]
57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1.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라	I조건	거래목적
गपाउपाउ	기대설자	7पापाठ	기대급적	단가/이자율	기타	기대득역
	소 계					
	소 계					
*						

기재상의 주의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 살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 융상품의 거래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9조 제5항 관련)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상대방"에는 거래한 금융·보험회사명을 기재
- 주4) "거래대상"은 거래한 단기금융상품명을 기재(예-MMF 등)
- 주5) "거래조건 기타"는 단가 혹은 이자율 이외에 약정된 거래조건을 기재
- 주6) "관련공시일"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 일자를 기재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공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 백만 원)

									(- 11 .	76 67
1. 당해회사의 각	직전사업(견도매출악	(A)			2. 거래기	비간			
3. 이사회 의결을	길			이사 참 .				사위원)		
			석여부	7 1	불참(명)		참석여부	₹		
4. 동일인 등 출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nı ᄎ	OH (D)	ппог	OH (C)	합.	계액		매출액대년	41
(동일인 등 출자기	1열회사)	매출	 i(0)	미리	액(C)	(D=	B+C)		(D/A, %)
5. 상품・용역 기	거래내역									
					거래	금액				
상품ㆍ용역 계약명			매출	OHS			매입	매입		
71170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결 거래대성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6.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대규모 니	H 부거래	공시규정	· 제9조의	2 제4항	관련)		•
계약체결방식			매출					매입		
	주요기	H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	래대상		거래금의	4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7 71Fk										

기재상의 주의

- 주1) 【분기공시】는 당해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이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라 함)」와 분기에 이루어질 상품·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임)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매출액"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
- 주4) "거래기간" 에는 상품 · 용역거래의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제외)를의미
- 주6) 매입·매출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름
- 주7) "매출액 대비"에는 상품·용역 거래금액(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

- 주8) 공시회사는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및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주9) 상품·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10)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1)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 주12) 분기 전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분기 중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 타"란에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

【일괄공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68	집사당		2007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						2. 거라	상[개방				
1. 낭행	해회사의	식선	선사업연보	도매출액(A)		(동일인	등	출자계일	결회사)			
					사외이사	. 참석	(명)			간사(간	사위원)		
3. 017	사회 의결	열			참석여부					참석여박			
										B 101	<u>'</u>		
4. 동일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												
년도	. J	레	nu	출액(B)		매입액(~)		합계약	객	0	H출액대비	I
	-	l간	Oll	돌식(0)		m a ~ (J)		(D=B+	-C)	((D/A, %)	
	1	/4											
	튠	크기											
	2	2/4											
		- - - !フ!											
		3/4 き기											
		<u>-</u> 기											
	4	/4											
	듄	크기											
5. 상품	품ㆍ용역	거	개내역										
								래	글액				
거래	상품ㆍ용	3역			ᅃ						nii Oi		
기간	상품・용 계약당	병			매출	T					매입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역	계약 방	체결 시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					<u> </u>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6. 계약	약체결방식 유형	병별 일괄공시(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저	제9조의2 제4항 관련)			
	계약체결방식	OH	출	OH	입		
	게약제결경약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1/4	경쟁입찰						
분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ПП	출	OH	OI		
	계약체결방식		크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2/4		구표기대대8	714167	구표기대대8	기대리기		
<i>2/4</i> 분기	지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エ コ/11つ						
	계약체결방식	OH	출	매입			
	71 7 71 2 6 7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3/4	경쟁입찰						
분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пи	ž	UU	01		
	수의계약 계약체결방식	매		애			
A/A	계약체결방식	매 주요거래대상	출 거래금액	마 주요거래대상	입 거래금액		
4/4 부기	계약체결방식 경쟁입찰						
4/4 분기	계약체결방식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방식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체결방식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기재상의 주의

- 주1) 【일괄공시】는 당해회사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 래기간을 정하여 분기별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 기재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매출액"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
- 주4)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제외)를 의미
- 주5) "년도"에는 상품·용역의 사업연도를 기재
- 주6) 매입·매출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름
- 주7) "매출액 대비"에는 상품·용역 거래금액(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

- 주8) 공시회사는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및 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 주9) 상품·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10)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1)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 주12) 분기 전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분기 중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 타"란에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

3.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워)

									(5.1)	70 0		
1. 당해회사의 각	직전사업(연도매출 의	(A)			2. 거래기	l간					
	2		사 오	사 외 이 사 참석(명)			감사(김	사위원) 쿠				
3. 이사회 의결을			참석	여부 불	참(명)	참석여부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내) 매출액(B)		511.61	매입액(C)		액	매출액대비				
				배입			(D=B+C)		(D/A, %)			
5. 상품·용역 기	 거래내역											
	가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기래금액											
상품ㆍ용역 계약명			011 2	-191								
	매출					매입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6.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	(대규모 니	내부거래	공시규정	세9조의	2 제4항	관련)				
계약체결방식			매입									
	주요거래대상 기			거래금액		주요거래대상		거래금액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7. 관련공시일												
8. 기타												

기재상의 주의

- 주1) 기공시한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의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내역을 기재(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련)
- 주2)【일괄공시】로 공시한 경우 기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분기의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거래기간"란에 상품·용역거래의 사업연도와 해당분기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매출액"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
- 주5) "거래기간" 에는 상품·용역거래의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6)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다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제외)를의미
- 주7) 매입·매출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름
- 주8) "매출액 대비"에는 상품·용역 거래금액(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

- 주9) 공시회사는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및 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 주10) 상품 · 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11)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2)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4항 관련)
- 주13) "관련공시일"에는 변경내역과 관련하여 최초 공시한 연월일을 기재
- 주14) "기타"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1.	보험회사명			회사와의 관계	
2.	보험가입일기	다			
3.	보험의 종류	!			
		가. 보호	병료		
		나. 보호	참금		
		다. 약정	병기간		
4.	l. 보험내역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마. 보호	병물건		
		바. 보호	병료 지급방법		
		사. 이지	다율(%)		
5.	이사회 의결	일			
	사외이사 침	·서어드	참석(명)		
	N40N E	3 7 VI T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6. 거래의 목적				
7.	7.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보험(퇴직연금 등 포함)에 가입하며 약정기간 총 불입액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 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퇴직연금 등 당해 보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보험물건"에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5.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원)

					(인기 : 백인 전/
1.	리스회사			회사와의 관계	
2.	리스계약일				
3.	리스시행일				
4.	리스물건				
5.	리스가액				
	가. 리스료				
	3. 리스조건	나. :	지급방법		
6.		조건 다. 기간 라. 이자율 마. 리스구분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9.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리스회사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이고 리스기간동안 납입할 총리스료(리스가액)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리스료는 1회분 리스료를 기재
- 주5) "지급방법"에는 3개월 후취 등 리스료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리스구분"에는 당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6.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 백만 원)

			(연위 : 백단 전)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2. 거래일자			
3. 거래금액			
4. 잔액			
	가. 수익증권 명칭		
5. 수익증권 내역	나. 펀드운용사	회사와의 관계	
	다. 기간		
	라. 만기일		
6. 거래목적			
7.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0	참석(명)		
물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수익증권의 운용회사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이고 가입 또는 입금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 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잔액"은 수익증권 운용회사 기준으로 기재
- 주5) "수익증권의 명칭"은 당해 수익증권의 계좌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재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7.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6.1)
1. 예ㆍ적금 수신호	사	회사와의 관계
2. 예ㆍ적금일		
3. 예ㆍ적금의 종류		
4. 예ㆍ적금 금액		
가. (기자율(%)	
5. 거래내역 나. (만기일	
다. 3	기간(일수)	
6. 거래목적		
7.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0	참석(명)	
- 사회에서 참석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예금 적금의 성격을 가진 거래를 기재
- 주2) 예·적금 수신회사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이고 예금·적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예금·적금의 종류"에는 계좌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재
- 주6) "만기일"에는 만기일이 있는 예금·적금인 경우에만 그 만기일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 재하지 않음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8.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단 전)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일	일자			
	רווכ ער וו	ווסנ	시작일		
סוונוובור ס	나. 거래기	12	종료일		
2. 거래내용	다. 거래다	개상			
	라. 거래금액				
	마. 계약체결 방식				
3. 총거래금액					
4. 이사회 의공	결일				
11010111	라서어ㅂ	참	석(명)		
- NEOLN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인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작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기간"은 거래의 유효기간을 기재
- 주5) "거래대상" 란에는 거래내용을 간단히 기재
- 주6) "계약체결 방식"에는 공시대상 회사와 거래상대방간의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를 기재(수의계약/경쟁입찰계약)
- 주7) "총거래금액"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해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의 총 누계 거래금액임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9.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결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	액 (원)					
	권면총	· 아 (통화단위)			
2-1 (해외발행)	기준환율					
2 1 (MAE6)	발행지역					
			시장의 명칭			
			금 (원)			
3. 자금조달의			금 (원)			
목적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금 (원)			
4. 사채의 이율			·율 (%)			
	만기	미사	·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행	사비원	사비율 (%)			
	행사가액 (원/주)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9. 신주인수권에	신주대금 납입방법					
관한 사항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10. 청약일						
11. 납입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자회에서 참석어구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5. 기타					 	
※ 관련공시일						

발행 대상자명	회사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주1)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은 때 공시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주4) "기준환율"에는 신고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주5)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6)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행사가액"은 행사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 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행사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8)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 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주9)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 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에 자세하게 기재
- 주10)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 주11) 특수관계인에 대해 사채를 발행한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란에 기재.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의결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흥액 (통화단 <i>위</i>	4)				
2-1 (해외발행)		기준환율				
2-1 (애피틸엥)		발행지역				
	해외상경	장시 시장의 !	경칭			
	시	설자금 (원)				
3. 자금조달의	운	영자금 (원)				
목적	타법인 유기	ŀ증권 취득자	금 (원)			
		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		변이자율 (%)				
4. 시제크 이글	만기	이자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전	환비율 (%)				
9. 전환에	전환가액 (원/주)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기간 실	작일			
10. 청약일		· · · · · · · · · · · · · · · · · · ·	료일			
10. 성약월 11. 납입일						
11. 급립될 12. 대표주관회사						
12. 내표수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 의결일						
14. 이사와 의율을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차서어ㅂ	돌삼	(8)			
) B ~ W ~					
15. 기타						
※ 관련공시일						

발행 대상자명	회사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주1)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은 때 공시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주4) "기준환율"에는 신고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주5)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6) "사채발행방법" 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 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전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8)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 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주9)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에 자세하게 기재
- 주10)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 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 주11) 특수관계인에 대해 사채를 발행한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란에 기재. "회사와 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의결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권면총	등액 (통화단위)			
2-1 (해외발행)	기준환율					
21(에되글6)	발행지역					
			시장의 명칭			
			금 (원)			
3. 자금조달의			금 (원)			
목적			취득자금 (원)			
			금 (원)			
4. 사채의 이율			율 (%)			
	반기	비이사	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卫	환비율	울 (%)			
	교환가액 (원/주)					
	교환가액의 조정					
9. 교환에 관한	교환할 유가증권					
사항	교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방법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10. 청약일						
11. 납입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 의결일						
내이이 내 참 되었다.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5. 기타						
※ 관련공시일	※ 관련공시일					

발행 대상자명	회사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주1)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교환사채의 발행(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은 때 공시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주4) "기준환율"에는 신고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주5)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6)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교환가액"은 교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교환가액 산정 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교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8)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주9)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 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에 자세하게 기재
- 주10)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 주11) 특수관계인에 대해 사채를 발행한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란에 기재. "회사와 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	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٨l·	설자금 (원)			
3. 자금조달의 목적	운	영자금 (원)			
77	기	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	#6	년이자율 (%)			
구. 시제크 이글	만기	이자율 (%)			
5. 사채만기일					
6. 이자지급방법					
7. 원금상환방법					
8. 청약일					
9. 납입일					
10. 대표주관회사	•				
11. 보증기관					
12. 이사회 의결을	일				
_ 사이이사 차서	I어브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기타	13. 기타				
※ 관련공시일			·		

발행 대상자명	회사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주1)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제외한 일반 사모사채)의 발행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 나 100억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있은 때 공시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주4)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주5)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 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에 자세하게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 주7) 특수관계인에 대해 사채를 발행한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발행내역]란에 기재.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제휴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1. 기술제휴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제휴 기술명				
	나. 제휴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제휴병	방법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제휴 (3. 기술제휴 이유			
4. 계약체결일	!			
5. 이사회 의	결일			
- 사외이사	카서 어 ㅂ	참석(명)		
- WHOIN	8 7 V T	불참(명)		
- 감사(감사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이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1. 기술도입 상	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이전 기술명				
	나. 이전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이전	방법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이전 이	3. 기술이전 이유			
4. 계약체결일				
5. 이사회 의결	일			
		참석(명)		
- 사외이사 전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감사(감사위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ļ .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술이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1. 기술이전 상	대방		회사와의 급	관계	
가. 이전받는 기술명					
	나. 이전	받는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이전	방법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도입 이유					
4. 계약체결일					
5. 이사회 의결	일				
11010111 =	. u a H	참석(명)			
- 사회에서 5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감사(감사위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회사와의 관계
자산총액 대비(%)

- 주1)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u>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u> 거나 100억원 이상을 증여받는(수증)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수증목적물"은 금전, 동산, 부동산 등을 말함
- 주5) "수증누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총누계금액임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	회시	ŀ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2 홋 292

(단위 : 백만 원)

<u></u> _				(যুগ পুর নু/
1. 수증자			회사와의 관계	
2. 증여목적물	2. 증여목적물			
3. 증여가액				
4. 증여누계금액	4. 증여누계금액			
5. 증여일				
6. 이사회 의결일	6.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7.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산총액 대비(%)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u> 거나 10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증여목적물"은 금전, 동산, 부동산등을 말함
- 주5) "증여누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 수증자에게 증여한 총누계금액임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맥만 원)
1. 차입유형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나. 차입처		회사와의 관계	
다. 차입기간		상환일	
라. 차입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지	l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			
마. 이자율(%)			
바. 상환방법			
3. 자금용도			
4. 거래상대방과의 차 (당해 사업연도 기원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당해회사의 직전사원 자산총액	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 <u>거나 100억원 이상</u>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을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차입유형"은 차관, 외화장기차입금, 장·단기차입금 등으로 구분
- 주5)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 · 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 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9.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단위: 백만 워)

						•	,	76 67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	일자					
2	대여금 내역	나. 거래	금액					
۷.	내어금 내목	다. 거래	상대방 총잔액					
		라. 이자	율(%)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						
		참석(명)						
_	사외이사 참석	역여무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 ('가지급금' 포함)를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0.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워)

				(611 - 76 6)
1. 원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가. 면제	금액		
2. 채무면제내역	대무면제내역나. 면제사유			
	다. 면제	일		
3. 채무내용				
4. 영향				
5. 이사회 의결의	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	석여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	원)참석여	부		
6. 당해회사의 ³ 총액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원)

					(21) 12 2
1. 원채권자				회사와의 관계	
	가. 면제금액				
2. 채무면제내역	나. 면기	에사유			
	다. 면기	레일			
3. 채무내용					
4.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	l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	부			
6. 당해회사의 직 자산총액	.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 거나 100억원 이상</u>의 채무를 면제받는 회사가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의" 공시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백만 원)

						(11)	• 백단 편/
1. 원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가. 인수금액						
2. 채무인수내역	나. 인=	수사유					
	다. 인수일						
3. 채무인수 후 박	쿠채비 율	(%)					
4. 채무내용	. 채무내용						
5. 이사회 의결일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	1여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	부					
6.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인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7665	가 기	5시크자	건인답ㅠ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 워)

1. 채무인수자				회사와의	관계	
	가. 인계금액 나. 인계사유					
2. 채무인계내역						
	다. 인계일					
3. 채무인계 후	부채비율	(%)				
4. 채무의 내용	채무의 내용					
5. 이사회 의결일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	막여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 민)참석여	부				
6. 당해회사의 직 자산총액	.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채무를 인계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공시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채무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백만 워)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매매일자		
2	부동산 매도내역	나.	거래대상		
۷.	구동선 배포내측	다.	소재지		
		라.	거래금액		
3.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_	사외이사 참석여	무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회사 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대상"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백만 워)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매매일자				
2	부동산 매수내역	나.	거래대상				
۷.	구승선 배구내학	다.	소재지				
		라.	거래금액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_	사외이사 참석여	무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5.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회사 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대상"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기업집단명	회/	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단 천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임대일자			
	나. 임대목적물			
	다. 소재지			
2. 부동산 임대내역		임대기간		
		거래금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임대목적물"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워)

					(12.11	. পায় ভা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임차일자					
	나. 임차목적물					
	다. 소재지					
2. 부동산 임차내역	-	임차기간				
		거래금액				
		- 보증금				
		- 연간임차료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임차목적물"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거래금액"은 연간임차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차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유가증권 매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워)

						`	<u>u. 11 . – </u>	112 127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일	자						
	וו אורוו	- 발형	자					
	나. 거래대	- 종류	<u> </u>					
2. 유가증권	다. 거래금액							
매도내역 리	라. 거래상대방 누계금액 (당해 사업연도 기준)							
		- 발형	일					
	마. 거래조	건 - 만기	일					
		- 이지	율					
3. 거래의 목적	럭							
4. 이사회 의길	열일							
11010111	라서어브	참석(명	!)					
- 사외이사 1	참석어무	불참(명	!)					
- 감사(감사위	위원)참석여	부						
5. 기타								
※ 관련공시을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RP, CMA, CD 등)의 거래시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의 발행자와 종류를 기재
- 주6) "거래조건"에는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발행수익율, 표면이율, 매입할인율)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유가증권 매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워)

			(인기 : 백단 전/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일자			
ון אורווגוג	- 발행자		
나. 거래대상	- 종류		
, ᆼᆩᆽᆿ 다. 거래금액	·		
2. 유가증권 매수내역 라. 거래상대 (당해 사업	방 누계금액 は연도 기준)		
	- 발행일		
마. 거래조건	- 만기일		
	- 이자율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RP, CMA, CD 등)의 거래시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의 발행자와 종류를 기재
- 주6) "거래조건"에는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발행수익율, 표면이율, 매입할인율)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0.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1. 거래성	상대본	;		회사와의 관계	
		가. 양도일자			
2. 자산임 내역		나. 양도독	목적물		
		다. 양도가액			
3. 양도독	3. 양도목적				
4. 양도에	4. 양도에 따른 영향				
5. 이사호	의	결일			
11 01 0	N 41	참석(명)			
- WAG	JI ∧r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여부		
6. 기타	6. 기타				
※ 관련	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도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판단립규 _{26조 및 1}	l법 29조
-------	-----	------	---------------------------	-----------

(단위: 백만 워)

1. 거래상대병	발		회사와의 관계	
	가. 양수일자			
2. 자산양수 내역	나. 양수목	목 적물		
	다. 양수가액			
3. 양수목적				
4. 양수에 따	른 영향			
5. 이사회 의	결일			
- 사외이사	라서CL	참석(명)		
- VINIV	참석어구	불참(명)		
- 감사(감사	·위원)참석	여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수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2.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6	최시 6	이시르시	севл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원)

					(21)
1.	거래상대빙	ţ		회사와의 관계	
		가. 출자일	자		
0	ᄎᄑᆡᆘᅄ	나. 출자목적물 다. 출자금액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۷.	출자내역				
3.	출자목적				
4.	이사회 의	결일			
	11010111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5. 기타				
×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이번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총출자금액을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3.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公 美 29公

(단위: 백만 워)

					(6) 1 16 6/
유상증자 참여지	}			회사와의 관계	
	가. 출자금액				
	나. 출자주식수(주)				
출자참여내역	다. 출	출자 후 지분율(%)			
	라. 출	출 자방법			
	마. 1주당 가격(원)				
	가. 종	· 등자금액			
유성공사내의	나. 종	등자주식수(주)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사외이사 참석(영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관련공시일					
	출자참여내역 유상증자내역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감사(감사위원) 기타	불자참여내역 다. 출 다. 출 다. 5 마. 1 유상증자내역 가. 5 나. 5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여부 감사(감사위원)참석이기타	자 출자금액 나 출자주식수(주) 다 출자주식수(주) 다 출자 후 지분율(%) 라 출자방법 마 1주당 가격(원) 가 증자금액 나 증자주식수(주)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어부 참석(명) 불참(명)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출자 참여내역가. 출자금액나. 출자주식수(주)다. 출자 후 지분율(%)라. 출자방법마. 1주당 가격(원)유상증자내역가. 증자금액나. 증자주식수(주)이사회 의결일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기타	가. 출자금액 나. 출자주식수(주) 다. 출자 후 지분율(%) 라. 출자방법 마. 1주당 가격(원) 유상증자내역 가. 증자금액 나. 증자주식수(주)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불참(명)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기타

- 주1) 특수관계인이 당해 회사(공시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이 자본 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출자참여내역"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출자내역을 기재. 출자방법에는 구주주우 선배정, 실권주인수 등 출자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유상증자내역에는 당해 유상증자의 총증자금액, 총증자주식수 등을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4.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원)

			 	()	7 12 12/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	Я	
	가. 담보제공일자				
	나. 채권자				
	다. 달	t보물			
2. 담보제공 내역	라. 달	t보기간			
2. జ포제공 내곡	마. 담보한도				
	바. 담보금액				
	사. 기	l래상대방 총잔액			
	아. 그	l래의 조건			
3. 이사회 의결일					
	- H	참석(명)			
- 사회이사 참석이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5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4.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금액의 산정은 담보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4) 담보 및 견질제공 어음·수표 포함
- 주5)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이번 담보제공 건을 포함하여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총잔액을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公 美 29公

(단위 : 백만 워)

회사와의 관계

- 주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회사가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거래금액의 산정은 담보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4) 담보 및 견질제공 어음·수표 포함
- 주5)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6)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7)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이번 담보제공 건을 포함하여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총잔액을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6.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 워)

							(61) 46 67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	일자				
		나. 유가증권의 종류					
2.	유가증권	다. 유가	증권의 수(주)				
	대여내역	라. 거래	글액				
		마. 거래상대방 총잔액					
		바. 거래조건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	일					
		. H ~ H	참석(명)				
_	사외이사 침	「식어무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5.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에 상당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대역를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기업집단명	회시	ŀ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2 홋 292

(단위: 백만 워)

				(যুগ পুর বু/
1. 공시대상회	l 사		기업집단	
2. 거래상대빙	ł		회사와의 관계	
	가. 거래일	₹ ↓ 자		
	나. 유가증	경기 종류		
3. 유가증권	다. 유가증	권의 수(주)		
차입내역	라. 거래=	급액		
	마. 거래상대방 총잔액			
	바. 거래조건			
4. 거래의 목	적			
5. 이사회 의	결일			
- 사외이사	차서어ㅂ	참석(명)		
ЛДОЛ	БЭИТ	불참(명)		
- 감사(감사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u>(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에 상당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차입을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8.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단위: 백만 워)

				 	(단위 : 백단 원)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2.	중개기관			회사와의 관계	
3.	처분주식의 발	행회사		회사와의 관계	
		가. 처.	른주식수(주)		
		나. 처.	불금액		
4.	처분내역	다. 처.	분단가(원)		
		라. 처분후 소유주식수(주)		처분후 지분율(%)	
		마. 거리	l일자		
5.	처분목적				
6.	처분방법				
7.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	iGI	참석(명)		
	//되어// ㅁㄱ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8.	8.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작성
- 주2) 계열사 주식의 처분 또는 계열사 등에게 타법인 주식의 처분을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중개기관"은 주식의 처분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6) "처분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처분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과 관계를 기재
- 주7) "처분방법"에는 장내처분, 장외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3. 중개기관	3. 중개기관			회사와의 관계	
3 취득주식의 발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			회사와의 관계	
	가. 취득	주식수(주)			
	나. 취득	글액			
4. 취득내역	다. 취득	단가(원)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			취득후 지분율(%)	
	마. 거래	일자			
5. 취득목적					
6. 취득방법					
7. 이사회 의결일	l				
- 사외이사 참석	4 U 드	참석(명)			
//되어// B=	101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8. 기타	3.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작성
- 주2) 계열사 주식의 취득 또는 계열사 등으로부터 타법인 주식의 취득을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중개기관"은 주식의 취득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6) "취득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과 관계를 기재
- 주7) "취득방법"에는 장내취득, 장외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0. 특수관계인에 대한 CP매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 백만 워)

				(난위 : 맥만 원)
1.	매도상대병	방		회사와의 관계
2.	매도일자			
3.	거래 금액			
4.	거래상대병	방 잔액		
5.	할인율(%)	١		
	가. 발행자		뱅자	회사와의 관계
6.	CP내역	나. 발행일		
		다. 만기	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	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취	삼억여누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석여부	
9.	기타			
×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CP를 매도하는 회사가 작성(CP매도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관련공시일"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P매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단위 : 백만 워)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CP를 매수하는 회사가 작성(CP매수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매도하는 회사가 작성(채권매도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종류"에는 당해채권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 (예 : 일반회사채00회, 전환사채00회, 신주인수권부사채00회, 교환사채00회 등)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매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1.	매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2.	매수일자			
3.	거래 금액			
4.	거래상대방	잔액		
5.	유통수익율	(%)		
		가. 발	·행자	회사와의 관계
		나. 종	류	
	ᆌᄀᄓᅝ	다. 권면금액(원)		자본금 대비(%)
о.	채권내역	라. 표면이율(%)		
		마. 발행일		
		바. 만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결	렬일		
			참석(명)	
_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석여부	
9.	9. 기타			
*	€ 관련공시일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는 회사가 작성(채권매수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당해회사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종류"에는 당해채권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 (예 : 일반회사채00회, 전환사채00회, 신주인수권부사채00회, 교환사채00회 등)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4.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 백만 워)

				(인기 : 백인 전)
1. 영업양수자	. 영업양수자		회사와의 관계	
2. 양도하고자 하는	가. 양도일자			
영업부문의 상세	나. 양도목적물			
내역	다. 양도가액			
3. 양도 목적				
4. 양도에 따른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지되어지 급극어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도목적물"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주5) "양도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 원)

회사와의 관계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u>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사가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회사와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수목적물"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주5) "양수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6.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리스 (Lease)]

기업집단명	회시	ŀ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2 홋 292

(단위: 억원, %)

	거래	기간									
거래	ווב וב	리스	리스	31 4 6 31	71 4 71 011		거래	조건		71 4 7 11	
상대방	관계	계약일	시행일	리스물건	스물건 리스가액		지급방법	리스기간	이자율	리스구분	거래목적
			소 계	ı							
			소 계	l							
	1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리스)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거래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리스료"에는 1회분 리스료를 기재
- 주7) "지급방법"에는 3개월 후취 등 리스료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8) "리스구분"에는 당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7.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예·적금]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 일)

거래기간								
		דו טוור וד	에 저그이조리		거래내역		2121157	–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일자	예・적금의종류	거래금액	이자율	만기일	거래목적	비고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예·적금)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유가증권 항목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예·적금의 성격을 가진 모든 거래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예·적금의 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거래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7) "예·적금의 종류"에는 계좌에 나와있는 명칭을 한글로 기재
- 주8) "만기일"에는 만기가 있는 예·적금만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9) "비고"에는 대출연계여부 등 특기사항을 기재

48.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파생금융상품】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 억 원, %)

거	거래기간									
	וורוה	וד וסווד וד	기계유됨	거래금액		TLOU	기루피시	71 71 7 71	기계으로	ш
거래상대방	관계	기대일사	거래유형	매입	매도	잔액	기소사산	거래조건	거래목적	비고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파생금융상품)를 한 경우 당해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파생금융상품에는 선물, 옵션, 스왑, 선도금리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식되는 모든 거래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매매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7) "거래유형"은 선물, 옵션, 스왑, 선물환, 선도금리 등 파생상품 거래나 계약유형을 기재
- 주8) "잔액"에는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파생금융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후의 파생금융상품의 잔액을 기재
- 주9) "기초자산"은 원자재,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주가지수 등 당해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에 기초가 되는 자산의 구체적인 종류를 기재
- 주10) "거래목적"은 위험기피, 투자 등 당해 파생상품 거래의 목적을 기재

49.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	<u> </u>	회사명	-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ZUX

(단위: 억원, %)

거	래기간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일자	보험종류	거래금액	거래	내역	거래목적
गपाउपा ठ	근게	기네르자	TEST	7UIO 4	약정기간	이자율	기대득극
		소	Ĵl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보험·퇴직연금 등)를 한 경우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거래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거래일자"에는 당해 보험의 약정일을 기재
- 주7) "거래금액"에는 당해 보험의 약정불입총금액을 기재
- 주8) "이자율"에는 불임보험료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는 보험의 경우 약정 시 거래조건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기재

50.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CP]

기업집단명	회시	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단위: 억원, %, 일)

	거래기간											
발행자 기계이지			거래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TLOU	하이오		CP내역		고 기 모 저	
발행자명	관계	거래일자	상대방명	관계	매입	매도	잔액	할인율	발행일	만기일	일수	거래목적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CP)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CP의 매매만 기재. 최초의 CP발행 또는 할인은 장단기 차입 또는 대여 항목에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CP의 발행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발행자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발행자명"에는 당해 CP의 발행회사를 기재
- 주7)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8) "거래상대방"에는 당해 CP의 매입처 또는 매도처를 기재
- 주9) "거래금액"에는 CP의 실제거래금액을 기재
- 주10) "잔액"에는 CP 발행자를 기준으로 CP의 매입 또는 매도후의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CP잔액을 기재
- 주11) "거래목적"은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가 CP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라 기재

51.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기타 유가증권】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כ	H래기긴	: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א	ייר איני	וד וס ווכ גר		거래금액		잔액	거래조건		고 _레 모 저
거래상대방	관계	기대일사	유가증권의 종류	매입	매도	선택	수익율	기타	거래목적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기타 유가증권)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주식, 채권, CP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RP, CMA, CD 등)을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거래상대방" 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입처 또는 매도처를 기재
- 주6)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7) 유가증권의 매매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매매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8)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9) "잔액"에는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매도후의 계좌에 기재된 유가증권 잔액을 기재
- 주10) "기타"에는 유가증권에 가입기간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고 그밖에 유가증권에 고유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52.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수익증권]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

	거래기간									
	수익증권내역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명칭 문용사 가입일 만기일				거래일자	매입	매도	상대방명	관계	거래목적	
23	명칭 문용사명 관계 가입		기합될	인기될		네 ii	็็	<i>व</i> पाच्च	선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수익증권)를 한 경우 당해 분기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MMF 등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으로 인식되는 것 모두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수익증권의 운용사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운용사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명칭"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계좌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재
- 주7) "거래상대방명"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처 또는 매도처를 기재
- 주8)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53.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주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거래기간									
발행	발행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리	배조건	
발행자명	관계	일자	거래		인수 • 매입	발행 • 매도	잔고	단가(원)	수량(주)	거래목적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주식)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4) 주식의 인수 · 매입 또는 발행 · 매도의 경우를 모두 기재
- 주5) 주식의 발행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별로 기재하고 발행자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발행자명"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회사를 기재
- 주7)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8) "거래상대방명"에는 당해 주식의 인수·매입처 또는 발행·매도처를 기재
- 주9) "잔고"에는 주식의 발행회사를 기준으로 주식의 인수·매입 또는 발행·매도 후 현재 보유 주식수를 기재

54.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유가증권-채권]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거래기간												
발행자		וורור	거래상대				채권내역				21.20		
발행자영	명 관계	거래 일자	상대방명	관계	매입	매도	유통 수익율	채권 종류	총권면 금액	표면 이율	발행일	만기일	거래 목적
	_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채권)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기간"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4) 채권의 매매만 기재. 최초의 채권발행 또는 인수는 장단기차입 또는 대여 항목에 기재
- 주5) 채권의 발행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발행자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발행자명"에는 당해 채권의 발행자를 기재
- 주7)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8) "거래상대방명"에는 당해 채권의 매입처 또는 매도처를 기재
- 주9) "채권종류"는 구체적으로 기재(예:일반회사채00회, 전환사채00회, 신주인수권부사채00회 등)

55.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대여】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일,%)

	거래기간									
거래 상대방	관계	거래일자	대여종류	거래금액	잔액	만기일	일수	이자율	거래목적	비고
		소	계							
		소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장단기대여)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 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회계기준상 장단기대여에 속하는 모든 거래(어음할인, 채권인수, 콜론, 담보대출 등)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대여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대여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7) "대여의 종류"에는 어음할인(CP할인포함), 채권인수, 콜론, 담보대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주8) "거래금액"에는 실거래금액을 기재
- 주9) "잔액"에는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금의 잔액을 기재
- 주10) "비고"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어음할인,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콜론의 경우에는 "중개대여"로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56.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장단기차입】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일, %)

	거래기간									
거래 상대방	관계	거래일자	차입종류	거래금액	잔액	만기일	일수	이자율	거래목적	비고
		소	계							
		소	계							
		총 계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장단기차입)를 한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 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
- 주2) 기업회계기준상 장단기차입에 속하는 모든 거래(어음할인, CP발행, 채권발행, 콜머니 등)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뤄진 사업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차입상대방별로 구분한 후 각각 거래일자순으로 기재하고 차입상대방별 소계 및 분기 총계를 기재
- 주6)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척3촌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7) "차입의 종류"에는 어음할인, CP발행, 채권발행, 콜머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주8) "거래금액"에는 실거래금액을 기재
- 주9) "잔액" 에는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차입금의 잔액을 기재
- 주10) "거래목적"에는 차입자금의 용도를 기재
- 주11) "비고"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어음할인, 한국자금중개를 통한 특수관계 인으로부터의 콜머니의 경우에는 "중개차입"으로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57.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억원, %)

	거래기간	,							
ווכ גר	וורוב	거래(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	거래 예정기간	거래 목적물	상품명	운용자금	조달자금	단가/이자 율	기타	거래목적	
				2	· - 계				
				2	· 계				
		이사	회 의결일	l					

- 주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 나 100억원 이상의 약관의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분기별로 사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등을 공시하는 양식임
- 주2) "기업집단명"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상대방"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계열금융·보험회사명을 기재(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당해 거래가 이루어질 사업연도와 분기를 기재
- 주5) "거래목적물"에는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장단기대여, 장단기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6) "상품명"은 거래목적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기재
- 주7) "운용자금"에는 당해 회사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할 목적의 채권인수, 채권매입, CP인수, 수익증권 매입 등의 거래한도금액을 기재하고, "조달자금"에는 채권발행, 채권매도, CP발행, 기타차입등의 거래한도금액을 기재
- 주8) "거래조건"은 단가 혹은 이자율 이외에 약정된 거래조건을 기재

[공익법인 공시 양식]

1.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 취득

기업집단명	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

(단위: 백만원)

1. 거래상대방			관	계	
2. 중개기관			관	계	
3 취득 주식의 밝	발행회사(-	소속회사명)			
가. 취득주식수(주)					
	나. 취득	금액			
4. 취득내역	다. 취득	단가(원)			
	라. 취득 후 소유주식수(주)		취득 후	지분율(%)	
	마. 거래일자				
5. 취득목적					
6. 취득방법					
7. 이사회 의결일	빌				
이시 카셔어!	=	참석(명)			
- 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 참석 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구분하여 기재
 - 예시: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중 구분 기재), 친족[혈족4촌,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중 구분 기재] 계열회사, 임원(계열회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 구분 기재), 비영리법인 등
- 주4) "중개기관"은 주식의 취득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5) "취득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을 발행한 국내 소속회사명을 기재
- 주6) "취득방법"에는 장내취득, 장외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해당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 처분

기업집단명	공 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단원)
1.	거래상대방			관	계	
2.	중개기관			관	계	
3.	처분 주식의 별	발행회사	(소속회사명)			
		가. 처분	^분 주식수(주)			
		나. 처분	불금액			
4.	처분내역	다. 처분단가(원)				
		라. 처분 후 소유주식수(주)		처분 후	지분율(%)	
		마. 거래일자				
5.	처분목적					
6.	처분방법					
7.	이사회 의결일					
	이사 참석여부	<u>1</u>	참석(명)			
			불참(명)			
-	감사 참석여부	<u> </u>				
8.	8.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l) 거래상대방,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구분하여 기재
 - 예시: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중 구분 기재), 친족[혈족4촌, 인척3촌 이내 및 기타친족(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중 구분 기재] 계열회사, 임원(계열회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 구분 기재), 비영리법인 등
- 주4) "중개기관"은 주식의 처분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5) "처분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익법인이 처분하는 주식을 발행한 국내 소속회사명을 기재
- 주6) "처분방법"에는 장내처분, 장외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해당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 계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기업집단명	공 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

(단위: 백만원, %)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리	l조건	거래목적
गपाउपाउ	기대될지	기대내경	714107	단가/이자율	기타	기대특별
	소 계					
	합 계					
*	《 관련공시일					

- 주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금융회사와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거래를한 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10일이 해당 공익법인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하는 양식(「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9조 제5항 관련)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상대방"에는 공익법인이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한 계열 금융·보험회사명을 기재
- 주4) "거래대상"은 거래한 단기금융상품명을 기재(예-MMF 등)
- 주5) "거래조건 기타"는 단가 혹은 이자율 이외에 약정된 거래조건을 기재
- 주6) "관련공시일"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 시 | 일자를 기재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분기공시】

기업집단명	공 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단위: 백만원)

										(11)	· 400
1. 해당 공익법인 직전 회계연임	인의 도 매출약	박(A)				2	2. 거래기	2. 거래기간			
			01	사	참석(명)		감	사		
2. 이사회 의결을	실 		참	참석현황 불참(명))		참석	l여부		
3. 동일인 등 출	자 계열:	회사와의	상품・용	역 거래	금액						
거래상대방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		매출	액(B)	OH	매입액(C)		합계액 (D=B+C)		매출액대비 (D/A, %)		
5. 상품ㆍ용역 거래내역											
					거	ᅫᇃ	글액				
상품ㆍ용역 계약명	OH						매입				
7176	거래대싱	거래조건	거래목적	병 거래금	액 계약쳐 방스	결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6.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	(대규모	내부거리	네 공시규	정	제9조의2	2 제4항	관련)		
계약체결방식			매출						매입		
게작제필당역	주요기	주요거래대상			ᅄ		주요거리	개대상		거래금의	Ħ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7 71FI											

- 주1) 【분기공시 양식】는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 회사(이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라 함)」와 분기에 이루어질 상품·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매출 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임)이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 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해당 공익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은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수익 중에서 공익법인이 상품나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말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과 '3의 매출액대비'를 '-'으로 기재)
- 주4) "거래기간"에는 상품 · 용역거래의 회계연도와 해당 분기를 기재
- 주5) "거래상대방"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의미

- 주6) 매입·매출액의 인식은 해당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름[매출액은 주3)과 같음]
- 주7) 공익법인은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및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 주8) 상품·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9)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0)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 주11) 분기 전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분기 중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 타"란에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

【일괄공시】

기업집단명	공 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1. 해당 직건	당 공익법인 전 회계연도	일의 E 매출액(/	4)		2 (. 거래상! 동일인 등	대방 출자계일	결회사)			
3. 01	사회 의결일	빌	0 참		참석(! 불참(!			감 참 ^소	사 성여부		
4. 동일	일인 등 출	자 계열회	사와의 상	품・용역	거래금역	4					
년도	기간	H OH	매출액(B)		매입액(C)	합계9 (D=B+	백 ·C)	매출액대비 (D/A, %)		J)
	1/4 분フ	l I									
	2/4 분기	l I									
	3/4 분フ	l I									
	4/4 분フ	l I									
5. 상품	품・용역 기	H래내역									
						거래	금액				
거래 기간	상품 • 용약 계약명	벽		매출	매출				매입		
기간	계약병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망식					망식
1/4 분기											
2/4 분기											
3/4											
3/4 분기											
4/4 분기											

6 741.0	ᆙᆌᅽᄡᄊᆼᇂ	HH 0174-		궈	TIO TO OLO	TUASET	DL 24 /				
о. л =	Ƴ세월링약 유용 	3222	별 일괄공시(공시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								
	계약체결방식	OH							매입		
		주요기	H래대상 -		거래금	금액	주요	'거래대심	}	거래듣	남액
1/4	경쟁입찰										
분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매출					매입		
	계약체결방식	주요기	H래대상		거래금	금액	주요	건래대성		거래금	}액
2/4	경쟁입찰										
2/4 분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매출					매입		
	계약체결방식	X 03	H래대상	메돌		2 OH		י אוורוו א		ווכ ער	ı OH
		무표기	ាជារាខ		거래금	5 '' '	子五	2거래대심	3	거래금	1 - 1
3/4 분기	정생합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계약체결방식			매출			매입				
	게삭제될당석	주요기	H래대상		거래금	금액	주요	거래대성	ţ	거래듣	¦액
4/4	경쟁입찰										
분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7. JIE	 }			•					•		

- 주1) 【일괄공시 양식】는 공익법인이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분기별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경우 기재 분기에 이루어질 상품·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임)이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인 분기에 대해서만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해당 공익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은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수익 중에서 공익법인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말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과 '3의 매출액대비'를 '-'으로 기재)
- 주4) "거래상대방"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의미

- 주5) "년도"에는 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의 해당 회계연도를 기재
- 주6) 매입·매출액의 인식은 해당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름[매출액은 주3)과 같음]
- 주7) 공익법인은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및 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 주8) 상품 · 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9)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0)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 주11) 분기 전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분기 중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기 타"란에 분기 전 예측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

5.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기업집단명	공 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

(단위 : 백만원)

								\ <u> </u>	
인의 도 매출액	(A)				2. 거래기	l간			
		OL	AL i	참석(명)		가	۸.L		
일						 참석			
자 계열회	회사와의 성	상품・용역	격 거래글	음액					
하이되니	매출!	액(B)	매입	액(C)			매출액 대비		
세달외사)					(U=0	5+U)		(D/A, %)
거래내역									
				거래	금액				
		매출	배출			매입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 방식
유형별	일괄공시(공시규정	제9조의	2 제4항	관련)				
							매입		
주요기	H래대상		거래금액		주요거	래대상		거래금의	4
				•			•		
	로 매출액일 자 계열화 방계열회사) 기래대상 유형별	로 매출액(A) 일 자 계열회사와의 (함 해열회사) 대출: 거래내역 거래대상 거래조건	대출액(A) 이 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대출액(A) 의 이 사 현황	대출액(A) 의 이 사 참석현황 불참(명) 불참(명) 가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 함 메열회사) 대출액(B) 대 대한 대출 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거래금액 계약체을 방식 유형별 일괄공시(공시규정 제9조의2 제4항	대출액(A)	대출액(A) 의 이 사 참석현황 참석(명) 감상 참석(명) 감상 참석연항 가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 함께열회사) 매출액(B) 매입액(C) (D=B+C) 거래내역 기래대상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계약체결 거래대상 기래조건 방식 기래조건 방식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방식 기래대상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조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도건 기래목적 기래금액 기라대상 기래조건 기래도건 기래도전 기라	대출액(A)	입

- 주1) 이미 공시한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의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내역을 기재(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련)
- 주2) 【일괄공시】로 공시한 경우 기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분기의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거래기간"란에 상품·용역거래의 회계연도와 해당분기를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기재
- 주4) "해당 공익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은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수익 중에서 공익법인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말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과 '3의 매출액대비'를 '-'으로 기재)
- 주5) "거래기간"에는 상품 · 용역거래의 회계연도와 해당분기를 기재
- 주6) "거래상대방"은 자연인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 제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의미
- 주7) 매입·매출액의 인식은 해당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름[매출액은 주4)과 같음]
- 주8) 공익법인은 계약건별로 거래대상, 거래조건 및 목적, 거래금액, 계약체결방식 등을 기재해야 함
- 주9) 상품 · 용역 거래내역 중 거래조건에는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재

- 주10) 계약체결방식에는 다음의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중 하나를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선정방식	설 명
경쟁입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수의계약	특정 상대방을 선정

- 주11)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며 그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 일괄공시'에 기재(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4항 관련)
- 주12) "관련공시일"에는 변경내역과 관련하여 최초 공시한 연월일을 기재
- 주13) "기타"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6.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기업집단명	공익 번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П		입인명			20오 및 293

(단위: 백만원)

								(단위	. 4	단펀기
1. 보호	. 보험회사명				공익법인과의 관계	4				
2. 보험	2. 보험가입일자									
3. 보험	3. 보험의 종류									
		가. 보험료								
		나. 보험금								
		다. 약정기간								
4. 보호	험내역	라. 약정기간 불입총보험료								
		마. 보험물건								
		바. 보험료 지급방법								
		사. 이자율(%)								
5. 이人	사회 의결	일								
_ 110	이이나 돼	서어디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거래의 목적										
7. 기E	7. 기타									
※ 관	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거래상대방으로 보험(퇴직연금 등 포함)에 가입하며 약정기간 총 불입액이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퇴직연금 등 당해 보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보험물건"에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7.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기업집단명	공약 법인	ġ.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단위: 백만원)

					(단위 : 백단원)
1. 리스회사				공익법인과의 관	Я
2. 리스계약일	2. 리스계약일				
3. 리스시행일					
4. 리스물건					
5. 리스가액					
	가. ā	리스료			
	나. 7	디급방법			
6. 리스조건	다. 그	기간			
	라. (이자율			
	Oł. ā	리스구분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결일					
- 사이이사 찬성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기괴이지 ㅁㅋ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9. 기타					
※ 관련공시일	※ 관련공시일				

- 주1) 리스회사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 리스기간동안 납입할 총리스료(리스가액)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리스료는 1회분 리스료를 기재
- 주5) "지급방법"에는 3개월 후취 등 리스료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리스구분"에는 당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8.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27) 422/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2. 거래일자				
3. 거래금액				
4. 잔액				
	가. 수익증권 명칭			
5. 수익증권 내역	나. 펀드운용사		공익법인과의 관계	
5. 구극등년 내극	다. 기간			
	라. 만기일			
6. 거래목적				
7.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참석(명)			
지되어지 음식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수익증권의 운용회사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 가입 또는 입금금액이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잔액"은 수익증권 운용회사 기준으로 기재
- 주5) "수익증권의 명칭"은 당해 수익증권의 계좌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재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9.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6) - 766
1. 예・적금 수신회사	공익법인과의 관계
2. 예・적금일	
3. 예ㆍ적금의 종류	
4. 예·적금 금액	
가. 이자율(%)	
5. 거래내역 나. 만기일	
다. 기간(일수)	
6. 거래목적	
7. 이사회 의결일	
사이이 내 장 네이티 참석(3)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예금・적금의 성격을 가진 거래를 기재
- 주2) 예·적금 수신회사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 예금·적금액이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소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경우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예금·적금의 종류"에는 계좌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재
- 주6) "만기일"에는 만기일이 있는 예금·적금인 경우에만 그 만기일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 재하지 않음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0.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공익 번이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

(단위: 백만원)

			(61: 766)
1. 거래상대빙	+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거래일자		
	나. 거래기간	시작일	
2. 거래내용	다. 기대기진	종료일	
2. 기대대등	다. 거래대상		
	라. 거래금액		
	마. 계약체결	방식	
3. 총거래금액			
4. 이사회 의	결일		
_ 11010111	카선언티	참석(명)	
- WHOW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거래기간"은 거래의 유효기간을 기재
- 주5) "거래대상" 란에는 거래내용을 간단히 기재
- 주6) "계약체결 방식"에는 공시대상 회사와 거래상대방간의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를 기재(수의계약/경쟁입찰계약)
- 주7) "총거래금액"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해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의 총 누계 거래금액임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제휴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1. 기술제휴 :	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제휴	기술명		
	나. 제휴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제휴병	방법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제휴 (3. 기술제휴 이유			
4. 계약체결일				
5. 이사회 의	결일			
- 사외이사	카서어ㅂ	참석(명)		
- MAOIM	삼작어구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해당 하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이전

기업집단명	공익 번이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답인당			202 봊 292

(단위: 백만원)

1. 기술도입 싱	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이전	기술명		
	나. 이전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이전	방법		
- -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이전 0	3. 기술이전 이유			
4. 계약체결일				
5. 이사회 의결	일			
11010111 =	- L U U H	참석(명)		
- 사회이사 원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6. 기타			
※ 관련공시일	7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해당 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술이전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1. 기술이전 신	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이전	받는 기술명		
	나. 이전	받는 기술내용		
2. 계약의 주요 내용	다. 이전	방법		
-	라. 대가			
	마. 계약기간			
3. 기술도입 0	3. 기술도입 이유			
4. 계약체결일				
5. 이사회 의결	열			
	# H VI H	참석(명)		
- 사회이사 원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빌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해당 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1. 증여자	증여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2. 수증목적물						
3. 수증가액						
4. 수증누계금액						
5. 수증일	5. 수증일					
6. 이사회 의결일	.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7. 공익법인의 직전사업 기본순자산	7.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신 대비(%)	<u>.</u>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u>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u>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증여받는(수증)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수증목적물"은 금전, 동산, 부동산 등을 말함
- 주5) "수증누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총누계금액임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어지다며	공약		고시이다	과경버그	공정거래법
76668	법인	명	용시일사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6.1) . 46.6)
1. 수증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2. 증여목적물		
3. 증여가액		
4. 증여누계금액		
5. 증여일		
6.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7.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기본순자산		기본순자산대비(%)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u>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u>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계
- 주4) "증여목적물"은 금전, 동산, 부동산등을 말함
- 주5) "증여누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동일 수증자에게 증여한 총누계금액임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26조 및 29조

(단위 : 백만워)

			(٤	<u>.</u> 1	백단전
1. 차입유형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나. 차입처		공익법인과의 관계			
다. 차입기간		상환일			
라. 차입금액					
- 직전사업연도말 지	가기자본				
- 자기자본대비 (%)					
마. 이자율(%)					
바. 상환방법					
3. 자금용도					
4. 거래상대방과의 차((당해 사업연도 기원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순자산총액		순자산총액 대비(%)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u>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u>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을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차입유형"은 차관, 외화장기차입금, 장·단기차입금 등으로 구분
- 주5)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중시일사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XE II .	. – –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거래	일자		
	나. 거래	금액		
2. 대여금 내역	다. 거래	상대방 총잔액		
	라. 이지	·율(%)		
3. 거래의 목적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Ī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	적여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가지급금' 포함)를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8.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기어지다며	공익	공시일자	과정버그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 공시일사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61) 466
1. 원채무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면제	금액	
2. 채무면제내역나. 면제	사유	
다. 면제	일	
3. 채무내용		
4.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0	부	
6.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순자산 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1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 –	•	,,
1. 원채권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면제금액						
2. 채무면제내역	나. 면제사유						
	다. 면기	데일					
3. 채무내용							
4. 영향	4.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	l 여 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	부					
6.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의" 공시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착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기업집단명	공의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76668	법인	으시크자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	 L L/
1. 원채무자	I. 원채무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인숙	누금액			
2. 채무인수내역	나. 인수	┝사유			
	다. 인수	누일			
3. 채무인수 후 부	3. 채무인수 후 부채비율(%)				
4. 채무내용	4. 채무내용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	l여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	부			
6.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채무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1.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인계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1. 채무인수자	. 채무인수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인	계금액			
2. 채무인계내역 나. 인	계사유			
다. 인	계일			
3. 채무인계 후 부채비	3. 채무인계 후 부채비율 (%)			
4. 채무의 내용	4. 채무의 내용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겨부			
6. 공익법인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인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공시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5) "채무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 제3자와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 11 .	1 6 67
1. 거래상대방			귀	당익법인과의 관계		
	가.	매매일자				
2. 부동산 매도내역	나.	거래대상				
2. 구동선 메포네틱	다.	소재지				
	라.	거래금액				
3. 거래의 목적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	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거래대상" 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기업집단명	공익	고시이다	과려버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공시일사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매매일자	
o 비도사 메스네어	나. 거래대상	
2. 부동산 매수내역	다. 소재지	
	라. 거래금액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대상"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11) 4111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임대일자			
	나. 임대목적물			
	다. 소재지			
2. 부동산 임대내역		임대기간		
	라. 거래내역	거래금액		
	다. 기대대극 	- 보증금		
		- 연간임대료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부동 산을 임대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임대목적물"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SNEX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인기 : 백단전)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임차일자			
	나. 임차목적물			
	다. 소재지			
2. 부동산 임차내역	9	임차기간		
	라. 거래내역	거래금액		
	다. 기대내극	- 보증금		
		- 연간임차료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부동 산을 임차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임차목적물"은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를 기재
- 주5)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읍·면·동)으로 기재
- 주6) "거래금액"은 연간임차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차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6.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유가증권 매도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익자	과려버그	공정거래법
	법인명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21)	
1. 거래상대방		공약	익법인과의 관계		
가. 거래일자					
	- 발행자				
나. 거래대상	- 종류				
다. 거래금액 2. 유가증권					
고. ㅠ가증편 매도내역 라. 거래상대빙 (당해 사업(
	- 발행일				
마. 거래조건	- 만기일				
	- 이자율				
3. 거래의 목적					
4.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RP, CMA, CD 등)의 거래시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5)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의 발행자와 종류를 기재
- 주6) "거래조건"에는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발행수익율, 표면이율, 매입할인율)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유가증권 매수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L I I I	1 6 67
1. 거래상대방	,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거래일자				
	나. 거래대상	- 발행자			
	দ. স দা দান্ত	- 종류			
2. 유가증권	다. 거래금액				
c. ㅠ거공전 매수내역	라. 거래상대방 누계금액 (당해 사업연도 기준)				
		- 발행일			
	마. 거래조건	- 만기일			
		- 이자율			
3. 거래의 목격	덕				
4. 이사회 의결	결일				
	= 4014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유가 증권을 매수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RP, CMA, CD 등)의 거래시 기재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의 발행자와 종류를 기재
- 주6) "거래조건"에는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발행수익율, 표면이율, 매입할인율)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주7)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61) - 766)
1. 거래상대병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양도일자		
2. 자산양도 내역	나. 양도독	목적물	
	다. 양도기	l 액	
3. 양도목적			
4. 양도에 따른 영향			
5. 이사회 의	결일		
11 01 01 11	ᆉᆈᄊᆸ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어구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여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도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2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SNEX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	
1. 거래상대병	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양수일계			
2. 자산양수 내역	나. 양수목	윾 적 물		
	다. 양수가액			
3. 양수목적	3. 양수목적			
4. 양수에 따	4. 양수에 따른 영향			
5. 이사회 의	결일			
11010111	ᆉᆈᄭᆸ	참석(명)		
- 사외이사	삼식어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여부		
6. 기타	6. 기타			
※ 관련공시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u>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자산</u>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수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0.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61) - 766)
거래상대빙	<u>}</u>		=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출자일자				
취ᆡᆘᅄ	나. 출자목	·적물			
물자내극	다. 출자금액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3. 출자목적					
이사회 의	결일				
11010111	카셨었다	참석(명)			
사되어사	삼식대구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 관련공시	일				
	출자내역 출자목적 이사회 의 · 사외이사 · 감사(감사 기타	나. 출자목다. 출자리다. 출자리라. 출자목적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가. 출자일자 나. 출자목적물 다. 출자금액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출자목적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기타	자 출자일자 나. 출자목적물 다. 출자금액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출자목적 이사회 의결일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자내역 다. 출자일자 다. 출자목적물 다. 출자금액 다. 출자라비생 총출자액 경자목적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불참(명) 보장(감사위원)참석여부 기타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u>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을 출자</u>하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금번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총출자금액을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1.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	공의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76668	법인	으시크자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117 - 414)
1. 거래상대방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달	남 보제공일자			
	나. 치	l권자			
	다. 달	남보물			
2. 담보제공 내역	라. 달	t보기간			
2. 급포제공 내극	마. 담보한도				
	바. 담보금액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아. 그	l래의 조건			
3. 이사회 의결일					
	ч —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이	경우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4.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금액의 산정은 담보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4) 담보 및 견질제공 어음·수표 포함
- 주5)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6)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이번 담보제공 건을 포함하여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총잔액을 기재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기어지다며	공익	공시일자	과정버그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 공시일사	2007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41) . 444)
1. 담보제공자	1. 담보제공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담	보받은 일자		
	나. 채	권자		
	다. 담	보물		
2. 담보 내역	라. 담	보기간		
2. జ도 내득	마. 담	보한도		
	바. 담보금액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아. 거	래의 조건		
3.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0	4 무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4. 기타				
※ 관련공시일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거래금액의 산정은 담보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 제1호 참조)
- 주4) 담보 및 견질제공 어음·수표 포함
- 주5)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6)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7)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이번 담보제공 건을 포함하여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담보총잔액을 기재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18868	법인명	O/IE/	CCEN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যুদা - প্রয়া
			공익법인과의 관계	
. 거래일	<mark></mark> 사			
. 유가증	등권의 종류			
. 유가증	등권의 수(주)			
. 거래금	금액			
. 거래성	남대방 총잔액			
바. 거래조건				
чн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5. 기타				
	유가증 유가증 거래를 거래소 거래조	참석(명) 경부 불참(명)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의 수(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총잔액 거래조건 점부 참석(명) 불참(명)	관계 기래일자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의 수(주) 기래금액 기래상대방 총잔액 거래조건 참석(명) 불참(명)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대여를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기업집단명	공의	고비이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76668	법인	공시일자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127) 4 12 12/
1. 공시대상 등	공익법인		기업집단	
2. 거래상대빙	ł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거래일	!자		
	나. 유가증	권의 종류		
3. 유가증권	다. 유가증	권의 수(주)		
차입내역	라. 거래듣	} 액		
	마. 거래상대방 총잔액			
	바. 거래조건			
4. 거래의 목	적			
5. 이사회 의	결일			
- 사외이사	창선대브	참석(명)		
ЛДОІЛ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차입을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양식의 상대방이 기재하는 양식임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5)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5.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기업집단명	공의	고비이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76668	법인	공시일자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인기 : 백인전/
1. 거래상(개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2. 중개기	<u> </u>		공익법인과의 관계	
3. 처분주4	식의 발행회사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처	분주식수(주)		
	나. 처	분금액		
4. 처분내	격 다. 처 .	분단가(원)		
	라. 처.	분후 소유주식수(주)	처분후 지분율(%)	
	마. 거리	배일자		
5. 처분목?	덕			
6. 처분방법	벌			
7. 이사회	의결일			
- YFSIOI	사 참석여부	참석(명)		
ЛДОГ		불참(명)		
- 감사(김	사위원)참석여	부		
8. 기타				
※ 관련공	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작성
- 주2) 계열사 주식의 처분 또는 계열사 등에게 타법인 주식의 처분을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5) "중개기관"은 주식의 처분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6) "처분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처분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과 관계를 기재
- 주7) "처분방법"에는 장내처분, 장외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법인명	S/1 을 사	전인입규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1. 거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3. 중개기관			공익법인과의	
3 취득주식의 발	행회사		<u>관계</u>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취득	주식수(주)	-	
	나. 취득	글액		
4. 취득내역	다. 취득	단가(원)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		취득후 지분율(%)	
	마. 거래	일자		
5. 취득목적				
6. 취득방법				
7. 이사회 의결일	1			
- 사외이사 참석	4 대 브	참석(명)		
// AO// B-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8.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작성
- 주2) 계열사 주식의 취득 또는 계열사 등으로부터 타법인 주식의 취득을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3)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4)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5) "중개기관"은 주식의 취득을 중개한 증권회사 등을 기재
- 주6) "취득주식의 발행회사"에는 공시대상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명과 관계를 기재
- 주7) "취득방법"에는 장내취득, 장외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8)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7. 특수관계인에 대한 CP매도

기업집단명	된 법(_{당익} 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	--------------------

(단위: 백만원)

				(원제 : 렉킨턴)
1.	매도상대병	ţ		공익법인과의 관계
2.	매도일자			
3.	거래 금액			
4.	거래상대병) 잔액		
5.	할인율(%)			
		가. 발행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6.		나. 발행일		
		다. 만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	결일		
			참석(명)	
_	사외이사 점	알석여무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9.	9. 기타			
×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CP를 매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CP매도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P매수

기업집단명	공익 번이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20

(단위: 백만원)

				(21 - 722)
1.	매수상대병	발		공익법인과의 관계
2.	매수일자			
3.	거래 금액			
4.	거래상대병	방 잔액		
5.	할인율(%)			
		가. 발	행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6.	CP내역	나. 발	행일	
		다. 만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	결일		
	사외이사 참	라서어브	참석(명)	
	VITION E	3'4'VIT	불참(명)	
_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석여부	
9.	9. 기타			
*	《 관련공시	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CP를 매수하는 공익법인이 작성(CP매수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39.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61) (61)
1.	매도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2.	매도일자			
3.	거래 금액			
4.	거래상대방	잔액		
5.	유통수익율	(%)		
		가. 발	행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나. 종류		
6.	채권내역	다. 권면금액(원)		기본순자산 대비 (%)
		라. 표면이율(%)		
		마. 발행일		
		바. 만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의결	별일		
	참석(명)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석여부		
9. 기타				
×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매도하는 공익법인이 작성(채권매도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종류"에는 당해채권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 (예 : 일반회사채00회, 전환사채00회, 신주인수권부사 채00회, 교환사채00회 등)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 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매수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다위 : 배마워)

			(단위 : 백만원)
1. 매수상디	1. 매수상대방		공익법인과의 관계
2. 매수일지	2. 매수일자		
3. 거래 금	백		
4. 거래상디	방 잔액		
5. 유통수익	율(%)		
	가. 빌	할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나. 종	 류	
6. 채권내역	다. 균	·면금액(원)	기본순자산 대비 (%)
0. ALEGI-		[면이율(%)	
	마. 빌	Ì행일	
	바. 민	·기일	
7. 거래목적			
8. 이사회 :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박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석여부	
9.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는 공익법인이 작성(채권매수의 직접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상대방 잔액"은 발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
- 주5) "종류"에는 당해채권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 (예 : 일반회사채00회, 전환사채00회, 신주인수권부사 채00회, 교환사채00회 등)
- 주6) "관련공시일" 란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시 일자를 기재
- 주7)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1.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공익	공시일자	과려번규	공정거래법
76658	법인명	SNEX		26조 및 29조

(단위: 백만원)

		(61) - 766)
1. 영업양수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2. 양도하고자 하는	가. 양도일자	
영업부문의 상세	나. 양도목적물	
내역	다. 양도가액	
3. 양도 목적		
4. 양도에 따른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시작에서 음극에는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도목적물"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주5) "양도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 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

기업집단명	공익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26조 및 29조
-------	-----------	------	------	--------------------

(단위: 백만원)

		(2.17 - 72.2
1. 영업양도자		공익법인과의 관계
	가. 양수일자	
2.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내역	나. 양수목적물	
	라. 양수가액	
3. 양수 목적		
4. 양수에 따른 영향		
5. 이사회 의결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l여부	
6. 기타		
※ 관련공시일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6. 기타		

- 주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공익법인이 작성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공익법인과의 관계"에는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동일인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2)부터 3)까지의 친족 중 혈족2~4촌·인 척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 주4) "양수목적물"에는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주5) "양수에 따른 영향"은 자산규모, 매출 등의 규모변화를 기재
- 주6) 당해 공시내용이 주요내용의 변경공시 또는 정정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공시일"란에 최초 공시한 사항의 연월일을, "기타"에 주요 변동내용 등을 기재

43.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의 공시

기업집단명	의 당 법인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9조
-------	---------------	------	------	---------------

(단위 : 억원, %)

	거래기간							
71.70	71.711	거래대	대상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	거래 예정기간	거래 목적물	상품명	거	거래금액 [기타	거래목적
				소 계				
				1	노 계			
총 계								
	이사회 의결일							

- 주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 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약관의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분기별로 사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거래목적 등을 공시하는 양식임
- 주2) "기업집단명"에는 해당 공익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재
- 주3) "거래상대방"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보험회사명을 기재(거래상대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주4) "거래기간" 에는 해당 거래가 이루어질 회계연도와 분기를 기재
- 주5) "거래목적물"에는 주식, 채권, CP,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장단기대여, 장단기차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주6) "상품명"은 거래목적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 기재
- 주7) "거래금액"은 채권인수, 채권매입, CP인수, 수익증권 매입, 채권발행, 채권매도, CP발행, 기타차입 등의 거래한도금액을 기재
- 주8) "거래조건"은 단가 혹은 이자율 이외에 약정된 거래조건을 기재